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8일 14시 03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	3

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

2014.04.17 조회수 693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38
담당부서	하수도과
상위법령	하수도법
조례	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
유형	4호 - 기타(부담금징수 등)
등록사유	국토도시개발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1998-04-04
규제시행/폐지일	1998-04-04
규제내용	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“타행위”에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36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41 >

Yeosu Web Contents

